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March 2017,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업무계획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소개

국내 고정사업장 이슈

CASES 업무사례

-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좋은상조 신주 및 구주 인수 거래 자문
- 한앤컴퍼니의 엔처치마케팅 지분 100% 매각
- 유동화 구조를 통한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국내 시중은행의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 사례
- 신라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골프존에 대한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공정위, 대리상에 대한 거래지역제한 건 무혐의 처분
- 변액보험 상품 적용 수수료율의 담합 건 무혐의 판결
- ICC 긴급 중재 성공적으로 방어
-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본인가 취득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인수
- 알리안츠의 손해보험업 예비허가 취득
- 브룩필드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
- 블랙스톤의 캐피탈타워 매입

NEWS 새소식

수상소식

7개 전 분야 Band 1 선정, 27명의 Leading Individuals 선정 - Chambers Global 2017

18개 전 분야 Band 1 선정, 55명의 Leading Individuals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7

15년 연속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Korea’ 수상 - IFLR Asia Awards 2017

‘Compliance/Investigations Firm of the Year’ 수상 - The Asia Legal Awards 2017

19개 분야에서 ‘In-House Community Firm of the Year 선정’ - Asian-MENA Counsel Firm of the Year 2016

국내 조세소송 점유율 1위 - 비즈니스워치 2016년 텍스랭킹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사무소 동정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정책토론회 참여

Thomson Reuters Annual Brief 2016 발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참여

제2회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워크숍 참여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7년 1월 5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정책과제로 ①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에 대한 감시와 시정, ②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③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을 세부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업무계획 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지식산업분야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표준기술이 확산된 반도체, 방송통신 분야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사업자 배제,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약분야에서 복제약 출시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 합의 조사를 위해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2. 독과점 시장 형성 방지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여 독과점 시장구조의 형성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M&A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나아가 사회적 이슈가 큰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목적 M&A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및 예비검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철도, 이동통신, 영화 시장 등에서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각 시장 분석을 통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조달 입찰시 경쟁저해 조건을 설정하는 규제, 레저산업 관련 진입 규제, 영업지역 제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3.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는 의료서비스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전자·자동차 부품, 운송서비스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수출입과 밀접한 국제카르텔 분야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 제도 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외 반역지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담합 전후 가격비교 정보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판매제한, 직구 및 병행수입 방해, 반려동물 분야 경쟁제한과 같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위는 기계, 전자, 의약품 분야 등을 대상으로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의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탁·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점검·시정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서면 미교부 행위를 상반기에 일제 점검하고, 부당 특약,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중소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당 광고를 집중 감시하는 등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강화를 위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ICT 기술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예약서비스, 확률형 상품과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기반 업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7. 플랫폼 사업,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쇼핑, 부동산, 배달, 숙박, 데이트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이용약관에 사업자 면책 조항, 최저가 보장 조항, 매출정보 임의사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부는 2016년 12월 30일, 위해우려제품의 범위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강화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였으며, 살생물질과 살생물질 관련 제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EU BPR(Biocidal Product Regulations)을 모델로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2016년 12월 28일~2017년 2월 6일)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 및 살생물제법 제·개정은 가습기 살균제 이슈 이후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화학물질 특히 살생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개정으로 강화된 고시와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Algicide)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Algicide)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안전기준 강화(2017년 3월 30일부터 적용)
 - 모든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과거,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용되었던 살생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방향제에 대해서는 PHMG, PGH 및 PHMB의 사용도 금지되었고, 스프레이형 탈취제 및 코팅제와 관련하여 사용 금지성분이 추가되고, 일부 사용 가능성분의 함량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표시기준 강화(2018년 6월 30일부터 적용)
 - 위해우려제품에 살생물질(biocides)나 유독물질(toxic chemicals), 제한물질(restricted chemicals), 금지물질(prohibited chemicals)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해당 성분명칭, 기능(첨가 사유),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질 함유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제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살생물질 승인제도 도입
 - “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과 미생물을 의미하며,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 신고된 살생물질을 기존살생물질로 고시한 다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생물제법에 따라 살생물질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
 - “살생물제품”은 ①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포함하여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또는 ②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살생물질을 생성하여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말하며, 물리적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살생물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기준 신설
 - “살생물처리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유해생물 제거 등이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으로 간주)을 의미합니다.
 -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에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가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법 경과
 - 정부는 위와 같은 살생물제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고시 및 살생물제법 제·개정안은 전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향후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법령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입법경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2017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60세 이상 정년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이러한 60세 이상 정년 조항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제11조), 이러한 반환의무 또는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7조제2항). 2016년까지는 위 법률이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동법 시행령 101조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고용보험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는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다태아 12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는 30일분(다태아 45일분)의 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2016년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 135만 원을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60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서,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비해 440원(7.3%)이 인상되었습니다.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9조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해 상여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기간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간제법’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간제법’의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등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계약 갱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시정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퇴사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권한이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향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고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지, 있다면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어떠한 처우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제도, 규정 및 관행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이어, 그 후속절차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 ‘소득세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보상만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고 출원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역시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에 따라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자 개정 ‘소득세법’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 중에 지급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에 지급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 원으로 정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비과세 범위는 연간 300만 원의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백우현 회계사(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bmjung@kimchang.com), 송형우 회계사(hyungwoo.song@kimchang.com)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소개

2016년 12월, 국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세법개정에 발맞추어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17년 2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대부분은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매우 유의미한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고객이 재화·용역을 구입한 실적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교부하면, 고객은 해당 마일리지 등으로 다른 재화·용역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마일리지 등을 사용 대가로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마일리지 등 사용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이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는 경우 포함)해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중 요건 충족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이 지정되었고, 최소 3명의 조세심판관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되 국세청장이 직접 요청하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 달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본 개정 시행령은 영 시행일(2017년 2월 7일)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 이슈

대법원은 지난 해 2월과 7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에 관한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에서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1. 국내 자회사의 사무실을 캐나다 법인의 사회간접시설 관련 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사례

본 사례에서 캐나다 법인은 국내 자회사 사무공간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무공간을 외국법인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 넘게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했거나 또는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넘지 않더라도 유사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장소로 보아 캐나다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과 관련 있는 또 다른 판결을 같은 날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된 사업관리용역을 그 이후 기간에 캐나다 법인의 관계회사인 영국 법인이 국내제공용역과 국외제공용역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 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여 국내제공용역에 대하여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국세청은 국외제공용역분의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외제공용역이 국내 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국내제공용역이 전체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국외제공용역도 국내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고 관련 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특히, 이 판결은 법인세법 및 조약상 소득의 '고정사업장귀속원칙'에서 벗어나 국외제공용역에 대해서도 과세한 사례인데,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계약을 두 개로 분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외국법인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2. 한국의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을 위해 필리핀 법인인 모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리핀 법인의 모객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에 관한 판례

필리핀 법인은 카지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카지노 영업장 내 사무실에 자기 종업원을 상주시켜 ① 외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업무와 ② 침교환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카지노업체로부터 이 장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상시 업무에 사용했고, 그 곳에서 행해진 ①과 ②의 행위가 필리핀 법인의 사업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사무실을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본 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고정사업장 이슈는 한 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법인이 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은 OECD가 BEPS Action 7를 통해 고정사업장 과세의 강화를 강조한 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되면, 과거 5년동안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같은 기간 중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국내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어 본세와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세범으로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역할과 기능 등 제반 사실관계를 분석, 한국 내 고정사업장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과세관청의 향후 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종업원을 제3국에 소재한 다른 자회사에 단기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3국 내 고정사업장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공격적으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니, 이 점 또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일반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좋은상조 신주 및 구주 인수 거래 자문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2016년 11월 3일 본 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SPC인 지플러스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좋은라이프 주식회사(구 좋은상조 주식회사)의 신주 및 구주 총 84%를 600억 여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매수와 신주발행 및 인수라는 2단계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좋은라이프 주식회사의 84% 주주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는 동종업계 자기자본금 1위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를 대리하여,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조업계에 대한 특유한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 상조상품 판매조직에 대한 법령 준수 등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 거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 지분 100% 매각

한앤컴퍼니는 2016년 10월 10일, 엔서치마케팅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와 주식회사 케이티에 60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한앤컴퍼니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나스미디어와 코스피 상장법인인 케이티에 동시에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거래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 등 거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면밀한 법률분석 및 거래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한앤컴퍼니를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유동화 구조를 통한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 관련 자문

본건 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SPC인 엘리시아제육차 주식회사 및 제이스씨제삼차 주식회사가 유동화증권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대캐피탈 지분 20%를 6,00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유동화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SPC는 현대자동차와 TRS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고정 이자를 수취하고,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의 본건 지분에 관한 가격 변동 위험을 인수하게 됩니다. 본건 거래는 자금조달 방안 및 거래구조가 복잡하여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유동화 거래의 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유동화 구조 수립을 자문하는 등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송

국내 시중은행의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 사례

국내 6개 은행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EFF) 보험증권을 담보로 모뉴엘의 수출채권을 매입하였는데, 사후적으로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실이 밝혀져 수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자, 각자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6건, 합계 약 3,600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심 판결의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즉, 2016년 11월에는 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2016년 12월 및 2017년 2월에는 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 2건이 잇따라 선고되었습니다.

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 (1) 단기수출보험(EFF) 약관의 해석상 허위의 수출거래는 보험의 적용대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허위의 수출거래로 인한 위험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허위의 거래를 더욱 횡행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청구를 인용한 2건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 (1) 단기수출보험(EFF) 약관의 해석상 진정한 수출거래만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도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된다.
- (3)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을 무역보험공사가 부담할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은행이 수출서류 심사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 (4) 반면, 무역보험공사의 과도한 한도책정, 부실한 신용평가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 (5) 근본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은행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수출무역 진흥이라는 ‘무역보험법’ 취지에도 반한다.
- (6) 은행이 개별 수출채권을 매입할 당시 제출된 수출서류가 수출거래의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은행이 심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7년 2월 17일에 선고된 제1심 판결에서는 허위의 수출거래로 인한 위험은 보험이 담보하는 신용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여 기존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는바, 향후 상급심에서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무역보험제도의 존재이유, 단기수출보험(EFF)의 도입경위와 취지, 이 사건의 파급효과 등을 통하여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허위수출거래에 따른 위험에 있어서 은행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 하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증권

신라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신라젠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6일, 신주 10,000,000주를 주당 1만 5천 원에 공모로 발행하여(총발행 규모 1,500억 원) 코스닥시장에 상장(IPO)하였습니다.

신라젠 주식회사는 항암 바이러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본건 IPO는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사의 법률 자문으로서 (1) 공모 및 상장 절차에서 수반되는 각종 계약서 검토, (2) 상장회사로서의 규제 사항 사전 정비, (3)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보호예수 절차의 진행, (4) 우리사주 배정관련 제반 검토, (5) 기업에 대한 상장 대비 실사 등 공모 및 상장에 관한 각종 제반 자문을 수행하여, 본건 공모 및 공모 관련 사항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골프존에 대한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공정위가 주식회사 골프존(“골프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골프존이 ① 점주들에게 자신의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2~3개 프로젝트 모델을 포함한 묶음상품의 형태로 판매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② 시스템 장애에 관한 내부 보상규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점주가 손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경우만 보상하고, 점주와 3차례 합의 시도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총 5개의 혐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8월 1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① GS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크린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프로젝트는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점, ② 점주들은 GS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GS시스템만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스크린골프 게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③ 다른 스크린골프 업체들도 프로젝트가 필수적인 구성품이라고 인식하여 시스템과 프로젝터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골프존의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① 불이익제공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과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두6213 판결 등 참조), 공정위는 본건에서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전혀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 ② 골프존과 점주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가 예정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위, 대리상에 대한 거래지역제한 건 무혐의 처분

공정위는 상용차 업체가 판매 대리상에 대해 판매지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지역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 2016년 10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정위 단계에서 해당 상용차 업체를 대리하면서, (1) 화물상용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 달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 소모품 교환, 고장 수리 수요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대리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판매에서 A/S까지 밀착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역’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 (2) 화물상용차 시장은 정부의 신규 공급에 대한 원칙적 금지로 인해 신규 고객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지역 소재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은 고객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브랜드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점, (3)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은 위탁매매인에 대해서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상으로 대리상은 위탁매매인과 거래의 형식(명의)에 차이가 있을 뿐 거래의 실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대리상에 대해 거래지역 제한을 두더라도 위탁매매인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해당 기준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대리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정위의 선례나 심사지침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무혐의 처분은 ‘상법’상 대리상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상품 적용 수수료율의 담합 건 무혐의 판결

김·장 법률사무소는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 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및 ‘특별계정운용’에 적용되는 각 수수료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4개 생명보험회사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 정보의 교환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자진신고한 사업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근거로 삼은 일부 진술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반하여 설불리 믿을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공정위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이끌어 낸 위 판결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 없이 단순히 정보교환이나 병행행위만을 가지고 부적절한 합의가 있다고 판단해 온 그간의 공정위 실무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중재·소송

ICC 긴급 중재 성공적으로 방어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서 심리 중이던 본안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긴급중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신청인 측을 대리하여 긴급중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상대방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

중재 신청을 하자, 약 한 달 뒤 상대방은 돌연 본안에 관한 중재 절차에서의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는 때까지 해당 계약을 존속시키는 긴급처분을 구하는 긴급중재를 ICC에 신청하였습니다.

ICC 국제중재 규칙에 의하면 긴급중재는 원칙적으로 긴급중재인이 기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일 뒤 중재인이 선정되었으며, 바로 그 다음 날 중재인과 당사자들 간 절차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저희 국제중재 그룹은 상대방의 긴급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구두 심리 기일이 열렸으며, 이를 뒤에 중재 비용에 관한 당사자들 서면이 제출되었고, 중재인의 결정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내려졌습니다.

ICC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제중재규칙이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전략적 또는 실질적인 이유로 긴급처분을 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중재 절차는 대체적으로 긴급중재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그 기일이 매우 촉박하여 긴급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상대방은 그에 대응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국제중재 그룹은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긴급 중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관련 사실관계 및 쟁점을 파악하고 법 논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덕분에 이 사건 긴급중재가 신청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국제중재 그룹의 노력으로 긴급중재인은 상대방의 신청이 긴급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긴급중재 절차를 위한 ICC 납부 비용 전부와 신청인 측의 변호사 비용도 일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은행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본인가 취득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에 대한 본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24년만에 받은 신규 은행업 인가이자,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최초의 인가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전에도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2001년 및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전자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및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우려 제기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Fintech 장려를 통한 금융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케이뱅크 및 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비로소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받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함으로써(카카오 은행은 2017년 1월 9일 본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 단계), 다양한 IT 기반 주주사들의 역량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편리한 은행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2017월 2월까지 사전 대비 차원에서 그 대상을 케이뱅크 임직원과 제휴회사 임직원 총 700여명에 한정된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이를 토대로 3월 말에 영업을 본격 개시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는 주주사로 있는 통신, 플랫폼, IT결제, 보안, 게임 업종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의 IT 노하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중금리(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간편송금, 자산관리 관련 Robo-Advisor)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고객 확대를 10년 내 총자산 1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뱅크 및 향후 인가를 취득할 인터넷전문은행들로서는 그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객을 대면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피한 업무에 대한 예외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② 은행의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비금융주력자

의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율과 관련한 수 개의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나, 그 처리 시기 및 방향에 대하여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케이뱅크의 본인가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법’상 기본적인 인가 요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방식을 전제로 한 영업에 적용될 수 있는 고객 실명확인, AML, 개인정보 보호 등 제반 규제를 검토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영 및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범위, 주주사와의 업무제휴와 관련한 규제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2015년 6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강판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제소자가 주장하였던 덤핑마진은 80.06%에 달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한국 내 가장 큰 수출자는 동국제강이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동국제강을 대리하여 미 조사당국에 9회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3주간에 걸쳐 진행된 현지 실사를 수검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수출경로, 관계사로부터 원재료 구입에 대한 적정가격 입증, 추가가공품에 대한 재판매, 신용비용, 내륙운송비 및 품질보증비용 등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쟁점사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성공적인 조사 대응으로, 동국제강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8.75% 이었으며, 이는 한국 내 경쟁 수출업체에게 부과된 47.80%보다 훨씬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 경쟁 수출업체에게는 1.19%의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으나, 동국제강의 경우 미소마진 판정으로 향후 상계관세 부과에서 영구적으로 면제받아, 동국제강은 미국 수출에 있어 추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인수

안방그룹홀딩스(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이하 “안방그룹”)가 2016년 4월 6일 알리안츠그룹(Allianz SE)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방그룹은 2004년부터 중국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금융리스, 상업은행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성장한 보험 그룹으로서 총 자산규모는 약 1조 9,700억 위안(약 350조 원, 현지 보험업계 9위)에 이르는데, 지난 2015년 동양생명보험(주)의 주식 63%를 인수하며 한국에 진출한 데 이어, 알리안츠생명보험을 추가로 인수하였습니다.

본 거래를 통하여 안방보험의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은 5위로 올라서게 되었고, 총 자산 규모가 43조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알리안츠생명의 인수를 위한 M&A 거래자문과 정부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거래를 통하여 안방그룹이 2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알리안츠의 손해보험업 예비허가 취득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 SE(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SE, “AGCS”)가 2016년 12월 2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손해보험사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AGCS는 기업보험 전문을 전문으로 하는 알리안츠(Allianz) 그룹 소속 회사로서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중국, 일본, 홍콩, 인도 및 싱가포르 등에서 해운, 항공, 에너지 분야 등의 단기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그룹은 한국 알리안츠생명보험에 대한 매각결정과 별개로,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금번 진출은 지점 형태로서 위 지점은 화재보험 등 기업보험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AGCS의 손해보험지점 예비허가 신청절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10여년 이상 금융당국은 단종보험 형태 이외의 손해보험업에 대해 허가를 내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의 인허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브룩필드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브룩필드(Brookfield)는 2016년 11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소유법인의 주주인 AIG로부터 소유법인(5개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부 매수함으로써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본건 거래는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이 포함된 대형 복합(complex) 건축물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소유하는 5개 유한회사의 지분을 각각 별개의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종적으로 위 모든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매도인 AIG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99년간의 토지 임대차계약, 5개 유한회사의 집합건물 구분소유 등과 관련한 부동산 고유 이슈들뿐만 아니라, M&A, Finance 및 Tax 등 거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임대차, 인허가 및 인사노무 등 각 건물들의 서로 다른 상업적인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이슈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블랙스톤의 캐피탈타워 매입

2016년 9월 13일, 블랙스톤이 운용하는 펀드는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캐피탈타워를 소유한 신탁형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1월 22일 매입거래 종결과 함께 위 펀드의 수익증권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거래는 부동산 실물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통상적인 구조가 아닌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구조를 취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기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펀드를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거래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최초로 투자하는 블랙스톤의 요구에 따라서 선도적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수익증권의 매매를 위한 법률실사,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NEWS 새소식

수상소식

7개 전 분야 Band 1 선정, 27명의 Leading Individuals 선정- Chambers Global 2017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Chambers & Partners에서 발행하는 세계 각국 법률시장 평가지인 'Chambers Global' 2017년 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7개의 한국 리서치 전 분야에 Band 1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Asia-Pacific 지역 리서치 'International Arbitration'분야에서 Band 4, China 지역 리서치 'Corporate/M&A'분야에서 Expertise Based Abroad, North Korea 지역 리서치 'General Business Law'분야에서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7명의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들이 각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으며, 4명이 Other Noted Practitioner로 소개되었습니다.

Chambers & Partners는 각 로펌의 제출자료, 인터뷰, 미디어 자체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전세계 190여개 국가의 분야별 우수 로펌 및 변호사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정 분야 및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ractice Areas

South Korea

- Banking & Finance (Domestic Firms): Band 1
- Capital Markets (Domestic Firms): Band 1
- Corporate/M&A: Band 1
- Corporate/M&A: Foreign Expertise for China
- Corporate/M&A: Foreign Expertise for North Korea
- Dispute Resolution-Arbitration: Band 1
-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Band 1
- Intellectual Property: Band 1
- International Trade: Band 1

Asia Pacific

- Arbitration (International): Band 4

China

- Corporate/M&A (International Firms): Expertise Based Abroad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Expertise based Abroad): Band 1

Leading Individuals

South Korea

- Banking & Finance: 조영균, 윤희선, 김영민
- Capital Markets: 고창현, 허영만, 정명재, 이호인
- Corporate/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허영만, 안보용, 박종현**, 이순열**
-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Kay-Jannes Wegner, Richard Menard, Joel E. Richardson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 정진영, 서정걸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장덕순, 양준영, 김영, 한상욱, 권남연**
- International Trade: 김주홍**

Japan

- 변영훈 (Expertise Based Abroad)

North Korea

- 권은민 (Expertise Based Abroad)

* Star Individual: A lawyer with exceptional recommendations in his field.

** Other Noted Practitioner: An individual who handles notable matters and / or has received some recommendation during the course of our research.

18개 전 분야 Band 1 선정, 55명의 Leading Individuals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7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Chambers & Partners에서 발행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지인 'Chambers Asia-Pacific' 2017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8개의 한국 리서치 전 분야의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North Korea 지역 리서치 'General Business Law' 분야에서 Band 1, Asia-Pacific 지역 리서치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에서 Band 4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55명의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들이 각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으며, 6명이 Other Noted Practitioner로 소개되었습니다.

선정 분야 및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ractice Areas

South Korea

- Banking & Finance: Band 1
- Capital Markets: Band 1
- Competition/Antitrust: Band 1
- Corporate/M&A: Band 1
-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Band 1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 Band 1
- Dispute Resolution - White-Collar Crime: Band 1
- Employment: Band 1
- Insurance: Band 1
- Intellectual Property: Band 1
- International Trade: Band 1
- Projects & Energy: Band 1
- Real Estate: Band 1
- Restructuring/Insolvency: Band 1
- Shipping: Band 1
- Shipping - Finance: Band 1
- Tax: Band 1
-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Band 1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Band 1

Asia-Pacific

- Arbitration (International): Band 4

Leading Individuals

South Korea

- Banking & Finance: 조영균, 윤희선, 김영민
- Capital Markets: 고창현, 허영만, 정명재, 이호인
- Competition/Antitrust: 정경택, 박성엽, 안재홍, 정영진, 김진오
- Corporate/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허영만, 안보용, 박종현**, 이순열**
-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Kay-Jannes Wegner, Richard Menard, Joel E. Richardson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 정진영, 서정걸
- Dispute Resolution - White-Collar Crime: 유국현, 최명석, 이승호, 이병석, 유형동**
- Employment: 현천욱, 김원정, 주완, 서덕일, 박정택
- Insurance: 안재홍, 박웅, 백재호**, 신현욱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장덕순, 양준영, 김영, 한상욱, 권남연**
- International Trade: 김주홍**
- Projects & Energy: 조영균
- Real Estate: 오연균, 유관식, 조근아
- Restructuring/Insolvency: 정진영, 임치용
- Shipping: 정병석, 이진홍
- Shipping - Finance: 윤희선
- Tax: 백제흙, 백우현, 여동준, 김동소, 최임정, 남태연, Stefan L. Moller
-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최동식, 박민철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권은민

* Star Individual: A lawyer with exceptional recommendations in his field.

** Other Noted Practitioner: An individual who handles notable matters and / or has received some recommendation during the course of our research.

15년 연속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Korea' 수상 - IFLR Asia Awards 2017

김·장 법률사무소가 3월 2일 홍콩 Island Shangri-La 호텔에서 개최된 'IFLR Asia Awards 2017' 시상식에서, 15년 연속으로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Korea'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법률 미디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매년 주최하는 'IFLR Asia Awards'는 각 로펌의 제출 자료 및 변호사들이 인터뷰 등 독자적인 리서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혁신 및 우수 로펌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Compliance/Investigations Firm of the Year' 수상 - The Asia Legal Awards 2017

김·장 법률사무소가 2월 22일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The Asia Legal Awards 2017'에서 2년 연속 'Compliance/Investigations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유명 법률지 The American Lawyer의 자매지인 The Asian Lawyer의 주최로 개최되는 'The Asia Legal Awards'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법률 및 가장 우수한 로펌과 파트너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부패방지·준법경영 그룹은 고객들로부터 “공인회계사들의 forensic accounting 역량과 사이버 수사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갖춘 IT 전문가들의 digital forensics 역량을 함께 두루 겸비한 유일한 곳(“the only one that has in-house capabilities both in the area of forensic accounting provided by certified accountants and in digital forensics by IT specialists with career experience within cyber investigation agencies.”)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부패방지·준법경영 그룹은 국내외 기업에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및 인사·노무, 민·형사 소송, 기업 내부 조사 및 문서관리 등 다양한 사안들을 자문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다양하고 유능한 인력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개 분야에서 'In-House Community Firm of the Year' 선정 - Asian-MENA Counsel Firm of the Year 2016

아시아·태평양 및 UAE 지역 법률 월간지인 Asian-MENA Counsel이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Representing Corporate Asia and Middle East Survey'를 실시한 결과, 김·장 법률사무소가 19개 분야에서 'In-House Community Firm of the Year'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사내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동시에, 최다 부문에 Winner로 선정됨으로써 'Most Responsive Domestic Firms of the Year: South Korea'와 'Top Multiple Category Winners: South Korea' 부문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별 로펌을 발표한 것으로, 1,000명 이상의 사내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Asian-MENA Counsel 잡지의 2016년 volume 14, Issue 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선정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Winner

-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including private equity)
- Anti-Trust/Competition
- Banking and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liance/Regulatory
- Corporate and M&A
- Employment
- Energy &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nternational Arbitration
- Litigation and Dispute Resolution
- Maritime & Shipping
- Real Estate/Construction
- Restructuring & Insolvency
- Taxation
- Telecommunications, Media & Technology

Honourable Mention

- Project and Project Financing

국내 M&A 법률자문 1위-Mergermarket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김·장 법률사무소가 인수합병 전문 정보업체 머저마켓 (Mergermarket)이 발표한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 국내 M&A 법률자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총 80건, 미화 약 230억 달러의 자문 실적으로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가 자문한 한화생명의 우리은행 지분 인수 건이 Top Deal로 소개되었습니다.

국내 조세소송 점유율 1위 - 비즈니스 워치 2016년 텍스랭킹

김·장 법률사무소가 비즈니스워치가 발표한 2016년 텍스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워치가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610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을 발표한 것으로, 저희 사무소는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610건 가운데 51건, 선고액 778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금액 기준 점유율 28.9%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M&A 법률자문 1위 -Bloomberg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김·장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미디어그룹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Asia Pacific Legal Advisory M&A Rankings 2016에서 대한민국 M&A 법률자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문건수 및 규모 기준으로 110건, 미화 약 276억 달러의 실적으로,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사무소 동정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정책토론회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백재호 변호사가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백 변호사는 본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주행기록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종현 변호사가 ‘기업활력법(원샷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주최하였으며, 기업활력법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본 세미나에서 기업활력법의 구조조정 지원 효과를 강조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Thomson Reuters Annual Brief 2016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경윤, 이순열 변호사가 ‘Thomson Reuters Annual Brief 2016’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경윤, 이순열 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의 ‘해외 투자 관련 이슈와 전망’ 세션에서 ‘Cross Border M&A 프로세스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Thomson Reuters Korea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분야별 이슈진단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12월 7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2회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워크숍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동근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워크숍’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12월 9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본 워크숍에서, 저희 사무소의 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Q&A 및 업종별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본 세션에서, 업종별 Q&A와 쟁점사항 및 청탁을 제외한 금품수수관련 사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Newszine